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21. 6. 11(금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유경수, 서기관 박주환, 주무관 신정옥 • ☎ (044) 201-4244, 4245, 4246
	항공운항과	담당자	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조종관, 사무관 박태규 • ☎ (044) 201-4259, 4786, 4311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.41억 원 부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6월 11일(금), 『행정처분심의위원회』를 개최하여 제주항공,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.41억 원을 부과하고,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^{*}을 심의·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
* (항공사) 제주항공 8.88억 원, 대한항공 0.33억 원, 아시아나항공 0.2억 원
(종사자) 조종사 2명, 정비사 2명 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

-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제주항공)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^{*}에 대해 각각 과징금 6.66억 원과 2.22억 원(총 8.88억 원)을 부과하고,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하였다.

* '21.3.10일 항공기 복행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끝 손상, '21.2.17일 이륙 중 후방 동체 하부 굽힘 발생

** 미처분 1건은 추가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량 반영·검토 후 차기 행심위에서 재심의 예정

- (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)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 5,300만원(대한항공 3,300만원, 아시아나항공 2,000만원)을 처분하였다.
 -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,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특히, 코로나-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.
 - 아울러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,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.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정책과 박주환 서기관(☎ 044-201-4245), 항공운항과 조종관 사무관(☎ 044-201-47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